

의안번호	제 28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9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 변경 등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임사무 신설>

-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보호에 관한 사무
 - 조난·부상 등 야생동물 구조·보호
 - 구조 야생동물의 구조관리센터 인계 조치
- (환경정책과)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 (기후대기과) 석면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신고
- (도로과)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위임사무 변경>

- (자연재난과)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 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 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재위탁 승인
 - 거.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 거.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처리신고자 행정처분, 재위탁 승인
- (교통철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시·군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수용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임사무 삭제>

- (에너지과) 발전설비(송배전 부문제외) 1,000kW 이하 규모의 다음 사항
 -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
 -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 라.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 마. 전기사업 허가취소 청문
 -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사. 공사 신고의 접수
 - 아.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세정담당관	1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자연재난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 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4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 법 제27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 법 제29조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마. 인가내용 고시 바.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 계획인가 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마.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 바. 죽목 · 갈대 ·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자. 스케이트장 · 유선장 · 도선장 및 계류장 (유선장 · 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2 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10	•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시장 · 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제7항
11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2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3	•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8조제1항
14	•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신축 또는 개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 변경 인가 · 고시 · 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같은 법 제38조제4항
15	• 국가하천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6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 · 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17	• 지방하천 점 · 사용허가의 실효 ·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8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 · 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69조
19	• 지방하천에서 허가 ·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하천법 제7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20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21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22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등	같은 법 제76조
	2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같은 법 제78조
	24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같은 법 제90조
	25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26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정수	같은 법 제98조
	27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28	·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29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 법 제9조
	30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1	· 보상금액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2	·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3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34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소상공인정책과	1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7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나.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3	·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매가격표시 점포 지정권 나. 가격표시 의무자에 관한 관계자료 제출 명령권 다.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라. 가격표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수 마. 가격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통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3항
	4	·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에너지과	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2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견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78조제4항
	3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31조제1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78조제4항
4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5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 나.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 다.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 라.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마.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 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 정량의 표시명령 정정요구 사. 보고 및 조사 등 아. 개선명령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차.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66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76조
6	· 어린이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7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8	·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제2호, 제3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산단관리과	1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며, 그밖에 KGB복합, 옥산, 오창제2, 오창제3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청주시에 위임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	· 처분 · 양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3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복지정책과	1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2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같은 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4	·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5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 · 회계에 관한 지도 · 감독	같은 법 제51조
	6	·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의 지원	재해구호법 제4조, 제5조
	7	· 입양축하금의 지원, 환수, 대장의 관리	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41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16조
보건정책과	1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식의약안전과	1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나.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다.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 ·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 마. 행정처분 바. 청문 사.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아.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자. 물수마약류의 폐기 · 처분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53조
문화예술산업과	1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건축문화과	1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2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 · 보고 · 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4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농업정책과	1	·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스마트농산과	1	·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 · 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같은 법 제9조
	2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17조
	3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같은 법 제24조
	4	· 다음 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 · 고시 및 통지	같은 법 제2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단,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5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축수산과	1	•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마. 보호비용 청구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동물방역과	1	• 도축장 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환경정책과	1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재위탁 승인 라.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마.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 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차. 보고·검사 등 카.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파.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하.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거.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처리신고자 행정처분, 재위탁 승인 너. 폐기물 처리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더.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2조제4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39조의2 같은 법 제39조의3 같은 법 제40조 폐기물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제47조의2 같은 법 제4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며. 의견제출 버. 과정금의 부과·징수 서. 대집행 및 비용징수 어. 청문 저. 과태료의 부과·징수 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커. 허가증의 재교부 터.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 퍼. 교육대상자의 교육기한 연기, 선발·통보 및 자료제출 요청	같은 법 제48조의2 같은 법 제48조의5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제56조
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나.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다.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라.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정금 부과·징수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자.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차.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카. 보고·검사 등 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하. 방치폐기물의 처리 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더. 청문 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 변경승인 (단,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4	· 야생동물 구조 · 보호에 관한 사무 가. 조난 · 부상 등 야생동물 구조 · 보호 나. 구조 야생동물의 구조관리센터 인계 조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 같은 법 제34조의4제1항
	5	· 국가자질공원 관리 및 운영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
기후대기과	1	·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다음 사무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에 한함) 가. 대기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 고시 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같은 법 제17조
	3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조치명령 라. 조업정지명령 등 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관한 폐쇄조치 등 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파.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의 접수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1조, 제22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4	·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령으로 정한 가정용 보일러의 의무설치에 대한 다음 사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가. 가정용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나.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5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6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7	•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8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 법 제94조
9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4항
10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수질 1~5종 사업장)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 관리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38조의3
11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 • 장비 검사의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같은 법 제68조
12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14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나.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명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연차보고서의 제출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7조
	15	• 석면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 나.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다.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라.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마.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 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제30조의2 같은 법 제30조의6 같은 법 제49조
	1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자동차 단속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수자원관리과	1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관한 수질검사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2	•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7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1조제2항 같은 법 제42조 먹는물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제61조제2항, 제3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3	·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 · 검사 · 수거 등	같은 법 제42조
	4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 징수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82조
산림녹지과	1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라.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9조제2항
	2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같은 법 제13조
	3	· 군지역 또는 시의 읍 · 면 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 · 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4	·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 징수 · 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 점검 ·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 사. 복구대행 · 비용충당 및 대집행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 · 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산지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 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 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5	· 임업후계자의 선발 · 육성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균형발전과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
	2	•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3	•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법 제30조, 제50조
	4	• 기반시설 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가. 도로(종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케도 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마. 광장(종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m ² 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사. 공동구 아. 공공공지 자. 수도공급설비 차. 전기공급설비 카. 가스공급설비 타. 방송·통신시설 파. 시장 하. 열공급설비 거.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너.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더. 문화시설 러. 연구시설 머. 사회복지시설 벼. 공공직업훈련시설 서. 청소년 수련시설 어. 유수지 저. 방화설비 처. 저수지(댐 제외) 커. 방풍설비 터. 방수설비 폐. 사방설비 혀. 방조설비 고. 하수도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노. 도축장 도. 장사시설 로. 종합의료시설 모. 폐차장 보.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오. 수질오염방지시설 조. 하천(소하천에 한함) 초.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	• 기존면적포함 15만m ²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6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같은 법 제32조
7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48조, 제53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8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 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같은 법 제98조
1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1조
11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3조
12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도시개발법 제4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13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14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m ² 미만의 주제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로과	1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마. 변상금의 징수 바. 원상회복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1조, 91조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103조 도로법 제117조
	2	·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3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40조제4항
	4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0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
	5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바. 도로에 관한 조사 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69조, 90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10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52조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7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교통철도과	1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발급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발급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발급과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사목의 사무에 한한다) 파. 청문(사목의 사무에 한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84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개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마. 등록의 표식 등 바.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 사. 등록번호표의 반납 아.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새김 명령 등 자. 검사 등 차.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파. 과징금의 부과·징수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의3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4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5	• 자동차의 사용정지	같은 법 제89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의 면허 나. 사용약관 인가 다.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라. 사용명령 마. 위치의 변경 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사. 재정지원, 조합감독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같은 법 제5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자.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차. 정관변경 등의 명령 카. 청문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86조
7	·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운영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 변경) 신고 처리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라.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8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 · 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 · 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 · 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 · 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 · 제3항, 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9	·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시외버스 제외)	같은 법 제22조제1항
10	·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 및 차량 초과 운행	같은 법 제84조
1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 등록 나. 수송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연기 · 개시기간연장 승인 다. 운임 · 요금의 신고 수리 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마. 사업계획변경 인가 · 등록 및 신고 수리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차.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카.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타.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파. 청문 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그 징수 거.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회계과	1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 (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관련 법령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자연재난과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 ② 시·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에너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

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 · 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 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 · 징수 등
 -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 · 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 ·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환경정책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다.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후대기과

【석면안전관리법】

-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9.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도로과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풋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풋대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풋대 등의 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교통철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 변경 등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